

광주일보 연중캠페인

# 1회용품 제로



## 2023. 11. 24. 부터

# 1회용품 사용 억제 품목 확대 및 준수사항 강화

### 집단급식소, 식품접객업

※ 장례식장 내 식품접객업은 조리시설과 세척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한함

#### 사용억제

- 1회용 컵(합성수지·금속박 등)
- 1회용 수저·포크·ナイ프
- 접시·용기(종이·합성수지·금속박 등) 1회용 비닐식탁보
- 1회용 종이컵
- 1회용 빨대·젓는막대
- 1회용 나무젓가락, 이쑤시개
- 1회용 광고선전물

#### 무상제공금지

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(종이재질은 제외, 상온에서 수분이 발생할 수 있는 제품을 담기 위한 합성수지재질의 봉투는 제외)
- (음식점 및 주점업만 해당, 제과점업은 사용 억제)

### 대규모 점포

(대형마트, 백화점, 복합쇼핑몰 등)

#### 사용억제

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(종이재질은 제외, 생선·정육·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을 경우는 제외)
- 1회용 우산 비닐
- 1회용 광고선전물

### 도소매업

(매장면적 33㎡ 초과 업소)

#### 사용억제

- 1회용 광고선전물

#### 무상제공금지

- 1회용 봉투 및 쇼핑백 (종합소매업은 사용억제)
- (종이재질은 제외, 생선·정육·채소 등 수분이 발생하는 제품을 담을 경우는 제외)

### 체육시설

(운동장, 체육관, 종합체육시설 등)

#### 무상제공금지

- 1회용 응원용품 (합성수지재질의 응원용품은 사용 억제)

### 대규모점포 내 식품제조·가공업, 즉석판매제조·가공업

#### 사용억제

- 1회용 합성수지용기 (밀봉포장용기, 생분해성수지용기 제외)

※ 자원재활용법 제41조제2항3조에 따라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